#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001

발의연월일: 2024. 8. 20.

발 의 자:서일준·고동진·권영세

안상훈 • 이헌승 • 이상휘

박성민 • 백종헌 • 강대식

조경태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출판 생태계의 변화로 전자책 출판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자원을 수집·보존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여 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고, 국회의원기록물에 대한 수집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항제4호, 제7조제1항 및 제3항).

법률 제 호

##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국회의원기록물 등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·분류·정리·보존·평가·활용

제7조제1항 전단 중 "공공기관등"을 "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등(국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"도서관자료(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)"를 "도서관자료(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)"를 "도서관자료(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. 다만, 온라인 자료 중 「도서관법」 제23조에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)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2조(직무) ① -----제2조(직무) ① 국회도서관(이하 "도서관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국 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한다. 1. ~ 3. (생 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 4. 국회의원기록물 등 국회 의 의 수집・정리・보존・평가・ 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 활용 분류 · 정리 · 보존 · 평가 · 활 용 5. ~ 7. (생략) 5. ~ 7. (현행과 같음) ② (생 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7조(도서관자료의 납본 등) ① | 제7조(도서관자료의 납본 등) ① 공공기관등이 도서관자료를 발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 기관등(국회를 포함한다. 이하 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 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 이 조에서 같다) -----내에 그 자료 2부와 디지털 파 일을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 다. 이 경우 도서관은 공공기관 등의 온라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③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가 도 (3) -----서관자료(온라인 자료는 제외 서관자료(온라인 자료는 제외 한다. 다만, 온라인 자료 중 한다)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

에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 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도서관은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

④ ~ ⑥ (생 략)

「도서관법」	제232	조에	따라
국제표준자료	번호를	부o	부받은
온라인 자료는	는 포함형	한다)-	
<b>.</b>			
④ ~ ⑥ (현	행과 같	음)	